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6.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나. 발 의 자: 이미자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시행 2021. 7. 13.)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용도 명확화 등
 - 주차환경개선사업 (안 제4조제1호 개정)
 - 주차질서 유지사업 (안 제4조제4호 개정)
 -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안 제4조제9호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시행 2021. 7. 13.)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명확화하기 위해,
- 안 제4조제1호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4조제4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9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사용 용도로 신설하였음.
- 또한,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 2021. 7. 1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별 세부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488
번 호	

발의년월일: 2022년 6월 일

발 의 자: 이미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법률 제17900호, 시행 2021. 7. 13)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안 제4조제1호 및 제4호 및 제9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4조제5호 및 제6조 및 제7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6. 8. ~ 6.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비용”을 “대행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의2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세출) ----- ----- ---
1. <u>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 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u>	1. <u>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 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 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 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 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u>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u>	4. <u>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 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 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 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 화를 위한 사업</u>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 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 례」 제5조제2항에 따른 <u>비용</u>	5. ----- ----- ----- <u>대행 비용</u>
6. ~ 8. (생 략) <u><신 설></u>	6. ~ 8. (현행과 같음) 9. <u>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 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u>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	제6조(잉여금의 처리) -----

산잉여금은 <u>다음연도</u> 세입에 이 월한다.	----- <u>다음 연도</u> ----- -----.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u>특별회계</u>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 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u>회계</u>----- -----. ----- ----- ----- -----.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의한</u> <u>다</u>.	제7조(준용) ----- ----- ----- <u>따른</u> <u>다</u>.